



보도	2024.2.5.(월) 조간	배포	2024.2.2.(금)	
담당부서	은행검사3국	책임자	국장	김시일 (02-3145-8350)
	인터넷전문은행검사팀	담당자	팀장	박병일 (02-3145-8345)
	자금세탁방지실	책임자	실장	박상현 (02-3145-7500)
	자금세탁방지기획팀	담당자	팀장	손인호 (02-3145-7502)

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

- ◆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사망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 발생
→ 금융질서 문란으로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
- ◆ 금융소비자(유가족 등)는 사망자의 신분증·휴대폰 등이 유출·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, 조속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(통보)할 필요
- ◆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후점검 강화 및 비대면거래시 실명(본인)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

I.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

- (개요) 최근 일부 은행 검사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전 은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,
 - 최근 5년간('18.8월 ~ '23.7월) 국내은행(17개)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,065건, 대출 실행 49건, 제신고 거래(계좌·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) 6,698건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*(사망등록일)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(모바일뱅킹, ATM 등)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.
- * ① 상속인금융거래조회, ② 신용정보원 사망정보 제공, ③ 유가족 신고 등으로 인지

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(최근 5년간)

(단위: 건, %)

거래유형	비대면	대면	합계
① 계좌 개설	969 (91%)	96 (9%)	1,065 (100%)
② 대출 실행	49 (100%)	-	49 (100%)
③ 제신고 거래	4,359 (65%)	2,339 (35%)	6,698 (100%)

※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은 자료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 총 346,932건(6,881억원) 발생



- **(발생원인)**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,
 -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,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(본인)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

[참고]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실명(본인)확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

-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계좌 개설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계좌를 활용*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해 타인도 사망자의 주요 정보**를 확보한다면 거래가 가능

* 고객의 타행 입출금계좌에 금융회사가 1원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 입력

** 사망자의 신분증, 휴대폰, 타행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, OTP 등

- 대출 실행이나 제신고 거래도 사망자의 휴대폰과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있으면 가능할 여지

- **(문제점)**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며,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.
 -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①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, ②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, ③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, 관련 법령(형법, 전자금융거래법 등)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참고] 사망자 금융거래 사례

(사례 ① : 예금 인출)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, 동생 B와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모친의 금목걸이를 동생 B에게 주지 않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 (대구지법, '24.1.15.)

(사례 ② : 대출 실행) 1주일전 사망한 친형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C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(서울동부지법, '22.12.1.)

(사례 ③ : 금융사기) 사망자 E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연루되어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(피해금)을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에 따라 지급정지(A은행, '23.7월)
→거래자가 타인에게 동 계좌를 양도한 경우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위반 등에 따라 처벌 가능

- 한편, 은행 입장에서라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「금융실명법」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, 예금 인출·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,
-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*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* (사례) A은행은 사망자 명의 대출 15건 중 9건이 연체되어 이를 특수채권(부실)으로 편입

II. 대응방안

- 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

[소비자 유의사항]

- ①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휴대폰·신분증·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,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*하는 한편,
-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실시

**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는 기한은 없으나 부적절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을 예방하고,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·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사실을 신속히 통보(또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)하는 것이 바람직

-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하면 즉시 사망고객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출금거래를 정지*하므로 사망자 명의의 잘못된 금융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* 대출 원리금상환, 자동이체(결제) 등 일부 제한적 거래 가능

- ② 만약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, 횡령 또는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고,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- 또한, 사망자의 예금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위반*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위반(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6조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)이 인정될 경우,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라 처벌 가능

※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

② 은행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사망일 정보 입수시 상시 감시(FDS 포함) 요건에 반영하거나 은행 자체적으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 혐의거래보고(STR), 채권보전 절차(대출 회수, 상계) 등 이행

- 이에 대해 금감원도 각 은행으로 하여금,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*할 계획입니다.

* '24.1분기중 은행권 '내부감사협의회' 점검주제로 선정하여 지도

③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*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금융위원회는 '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'을 발표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시 안면인식 시스템의 도입(권고사항) 등을 추진 ('22.9월)

→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'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' 마련 ('24.3월 실시 예정,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)